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84 및 2025카기1190

제소자 : <별지 1>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정민용, 김동욱

피고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2. 총원의 범위

2023. 8. 7.부터 2023. 11. 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파두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사 파두가 2023. 11. 8. 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3.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추후 확장 예정).

나. 청구원인의 요지

파두는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 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하여 주식을 공모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함.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2025.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주진암



별지 1.

제소자 목록

번호	제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조		
2	서		
3	강		
4	김		
5	김		
6	김		
7	박		
8	유		
9	이		
10	이		
11	정		
12	정		
13	정		
14	조		
15	황		